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8.



국토교통부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1.1.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내용

1) 계획명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2) 범 위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 면 적 : 7,310,502㎡
- 계획인구 : 103,500인(46,000세대)
- 사업기간 : 2024년~2033년

3) 계획수립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5) 협의기관 : 환경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72호)”에 따라 작성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75호)”에 따라 평가준비서 작성시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으로 봄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2.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지정면적 : 7,310,502m²]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2. 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향후 본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 중 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30만m²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표 1-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라. 기후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지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지구 면적은 7,310,502m²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m ²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2) 환경영향평가시

- 본 계획은 향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지구 면적은 7,310,502㎡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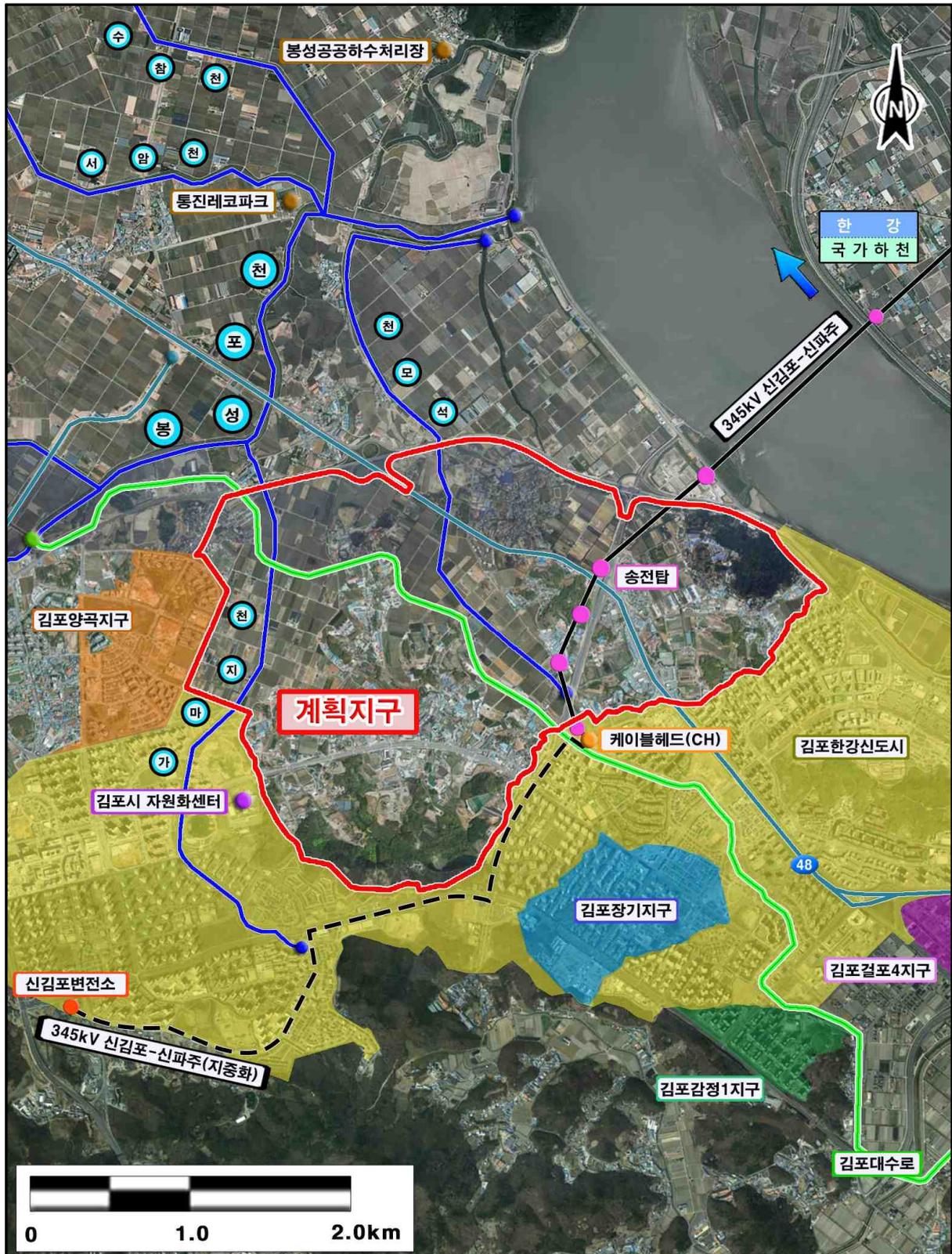
<표 1-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마.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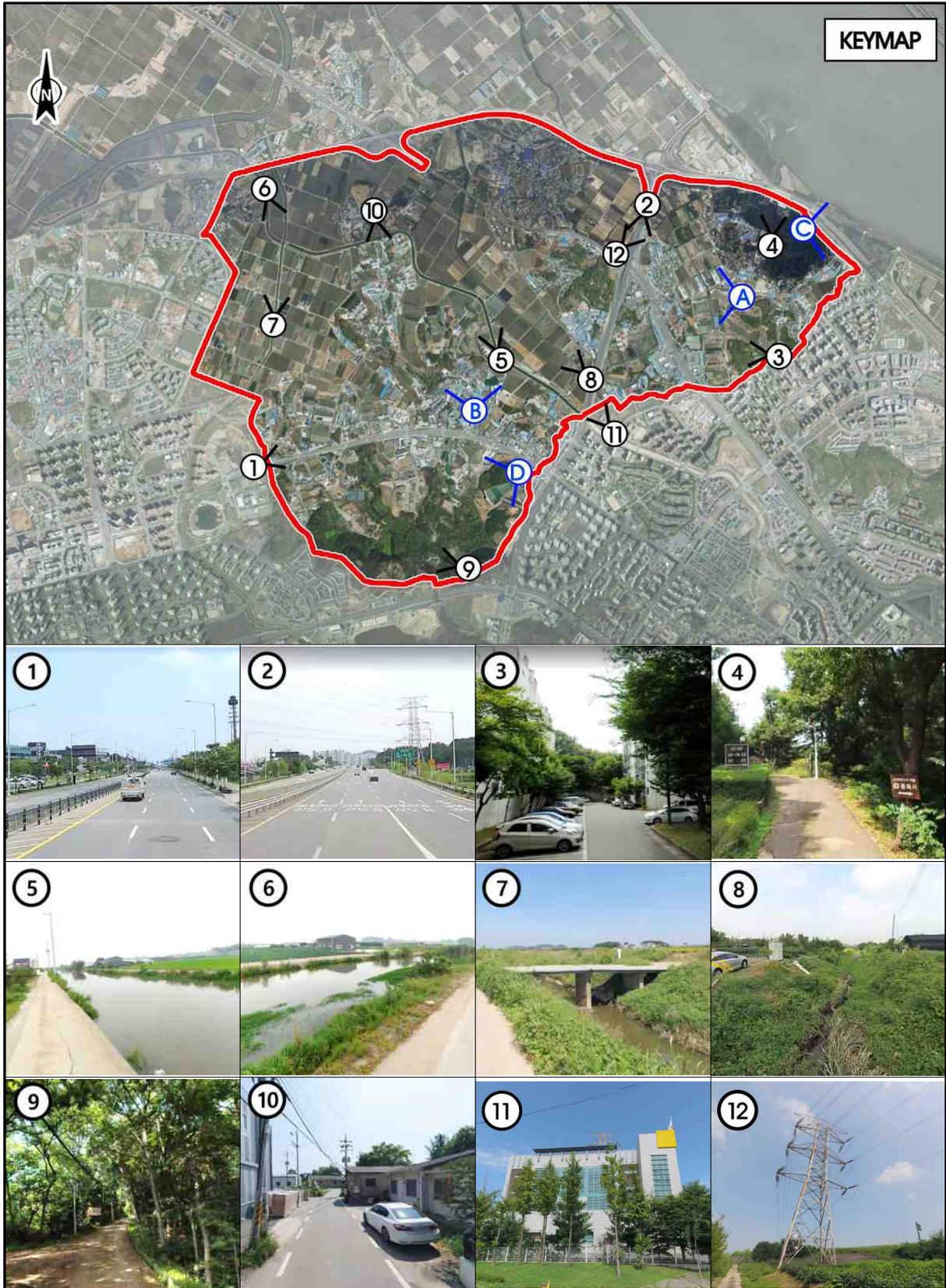
- 2022. 11. :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국토부) 및 주민공람(김포시)
- 2023. 07. 21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23. 07.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3.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2> 계획지구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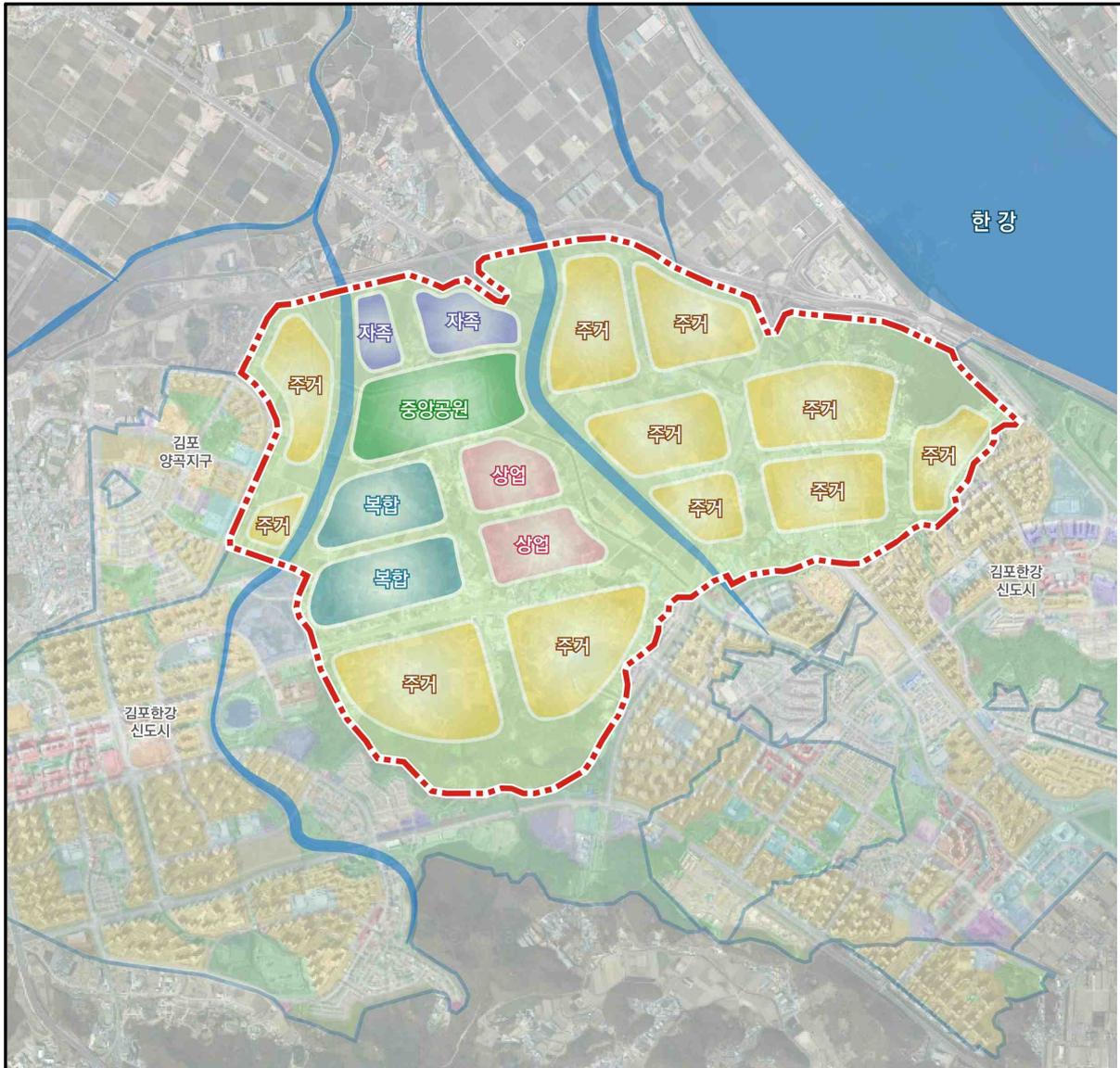
<그림 1-3> 계획지구 주요 전경 현황



<그림 계속> 계획지구 주요 전경 현황

바. 계획의 주요내용

□ 토지이용구상(안)



주) 본 절차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단계의 토지이용구상(안)으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검토·제시할 계획임.

구분	총계	주택 건설용지	상업 시설용지	도시지원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소계	공원녹지	기타시설
면적(m ²)	7,310,502	2,683,000	103,000	929,000	3,595,502	2,083,000	1,512,502
비율(%)	100.0	36.7	1.4	12.7	49.2	28.5	20.7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결정사항 : 평가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일자 : 2023년 07월 21일(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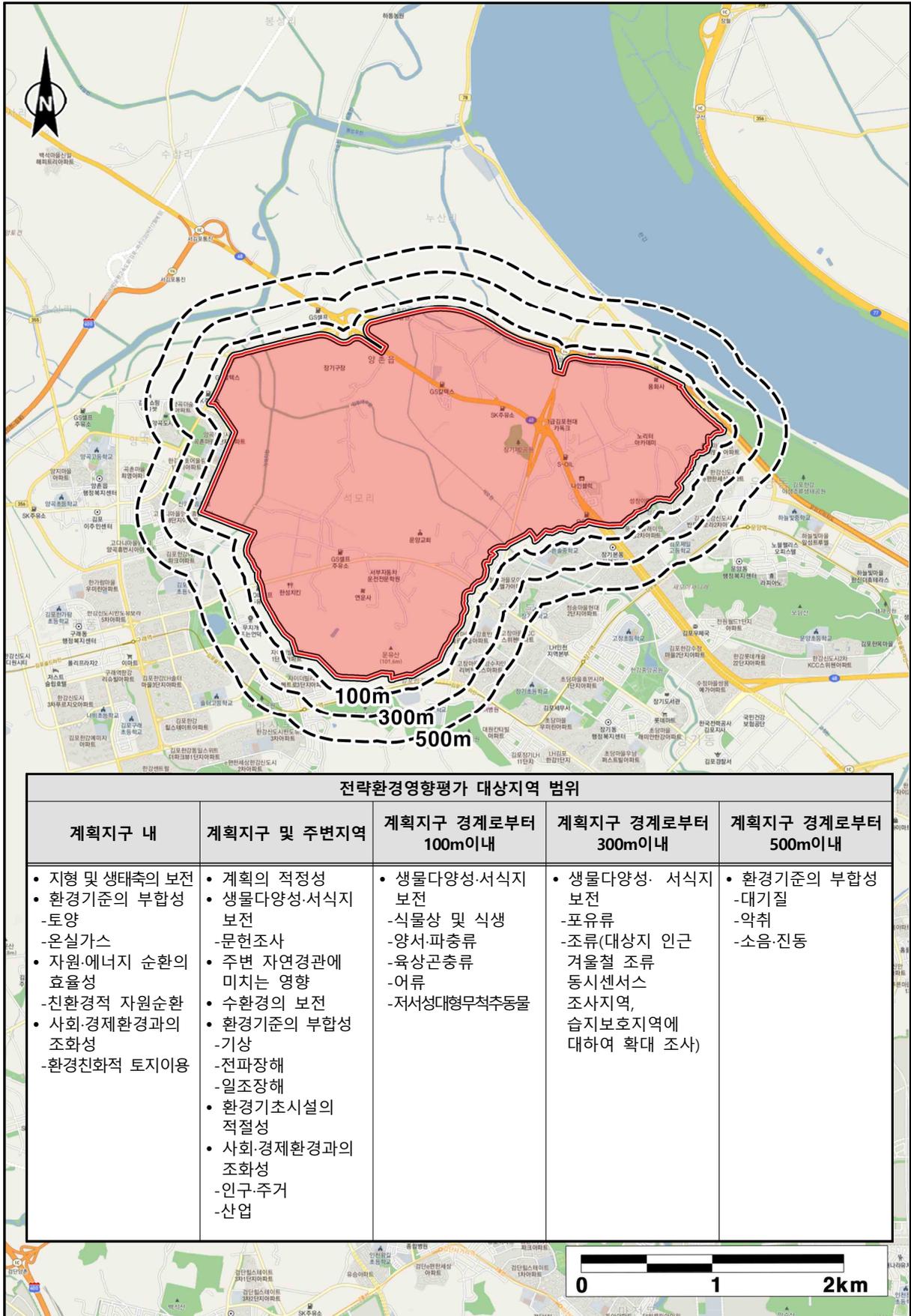
- 본 계획수립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계획 시행시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평가항목별로 계획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국도48호선,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등의 광역교통 체계와 김포양곡지구, 김포장기지구, 김포한강신도시, 김포감정 1지구 등 기개발지가 위치함 •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이 계획지구 일부 포함됨에 따른 이동경로 등 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 분류군별 조사범위는 "주" 참조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 운영 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지역 • 생태축 및 녹지축 단절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토지이용변화,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입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참조 (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본 사업 조류 조사는 계획지구 인근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확대 조사
 - 광역조사 범위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 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공사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등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운영시 발생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수질오염총량 검토(한강수계 한강J 단위구역) 계획지구 내에 위치한 김포대수로로 인한 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봉성포천, 가마지천, 석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최근10년간)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인근 기상관측소)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개발된 공공주택지구,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악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경계로부터 500m이내) 악취발생원(김포시자원화센터 등) 현황조사 및 입지에 따른 계획지구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온 실 가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소 음 진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지구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기존주거지, 기개발지 및 국도48호선,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등이 위치함 운영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전 파 장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파장해 유발시설(송전탑 등) 입지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일 조 장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및 관련 계획,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에 따른 산업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계획지구 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환경기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 -온실가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 -전파장애 -일조장애 환경기초시설의 적절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주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유류 -조류(대상지 인근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확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나.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을 고려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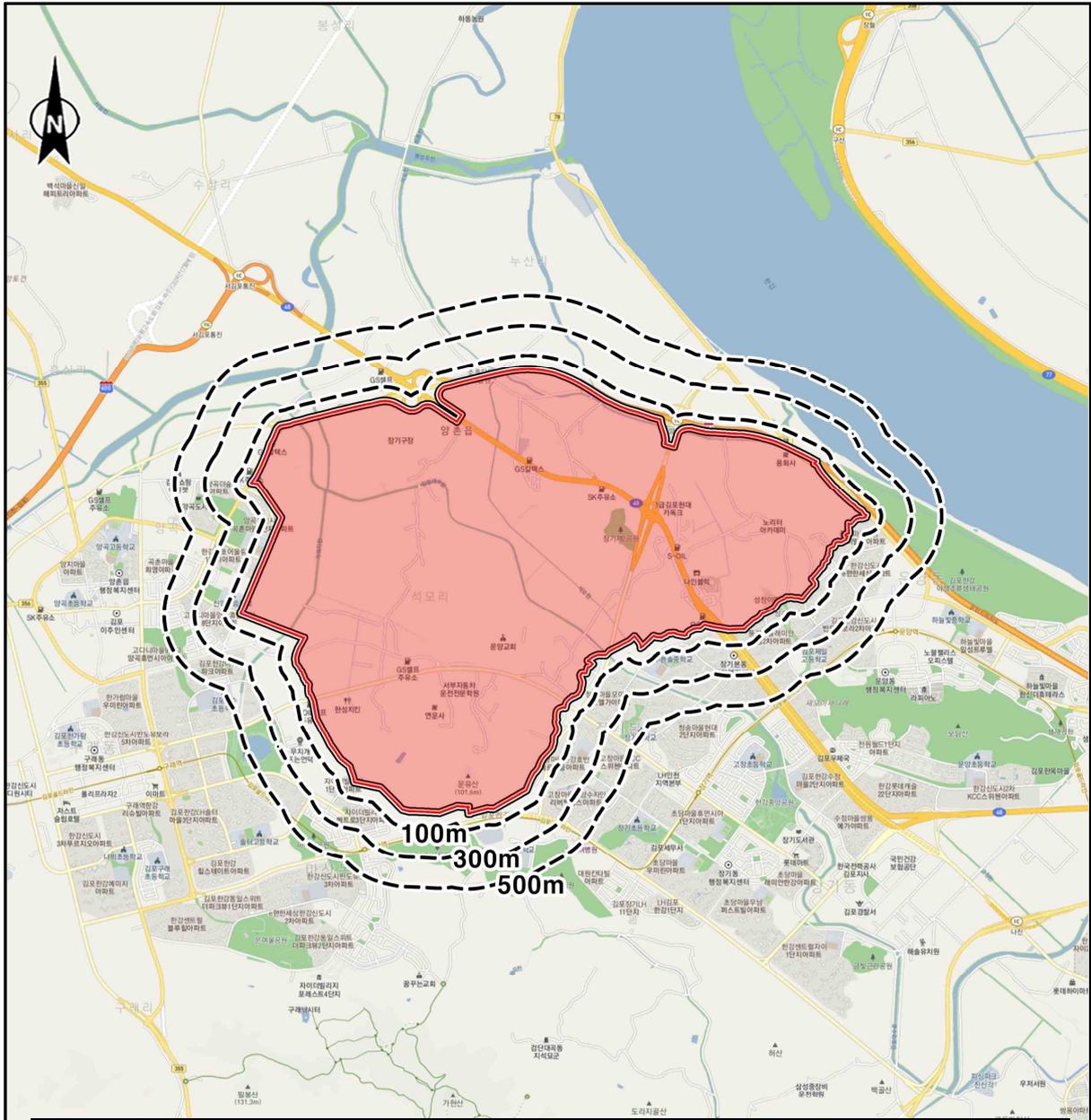
<표 2-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식생 및 생태축 변화, 육상·육수동물의 서식처 및 이동로 훼손 등 동·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국도48호선,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등의 광역교통체계와 김포양곡지구, 김포장기지구, 김포한강신도시, 김포감정1지구 등 기개발지가 위치함 • 한강하구(오두산전망대-일산대교)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이 사업지구 일부 포함됨에 따른 이동경로 등 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분류군별 조사 범위는"주"참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 운영 시
	자연환경 자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자산(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 등) 변화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 운영 시
대기 환경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예측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인근 기상관측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 운영 시
	대 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공사장비 이동·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토공에 따른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개발된 공공주택지구,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인근 소각장 운행에 따른 사업지구 미치는 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 운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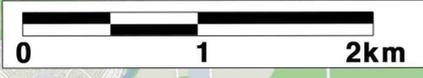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참조 (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본 사업 조류 조사는 계획지구 인근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확대 조사
 - 광역조사 범위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대기 환경	악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경계로부터 500m이내) 악취발생원(김포시자원화센터 등) 현황조사 및 입지에 따른 계획지구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운영시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수 환 경	수 질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공사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등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운영시 발생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수질오염총량 검토(한강수계 한강J 단위유역)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수립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유출량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봉성포천, 가마지천, 석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편입 등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흙쌓기 및 흙깎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사업지구 이용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사업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지구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기존주거지, 기 개발지 및 국도 48호선,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등이 위치함 운영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경관영향 및 변화발생 지역(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생활 환경	위생·공중 보건	• 운영시 사업지구 인근 김포시자원화센터 등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영향 예상 지역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운영 시
	전파장해	• 사업지구 내·외 송전탑 및 송전선로에 의한 영향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사회 ·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 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산 업	• 사업 시행에 따른 산업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친환경적자원순환 • 전파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문화조사 • 자연환경자산 • 기상 • 수질(수리·수문) • 경관 • 일조장해 • 인구·주거 •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포유류 -조류(대상지 인근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확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 약취 • 소음·진동 • 위생·공중보건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2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가지 안을 의미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23. 02」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를 참고로 대안을 선정하여 최적안을 선정함.
- 본 계획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계획의 경우 “계획 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함

<표 2-3>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비교	•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적용	계획수립 여부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	-
수단·방법	•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
수요·공급	•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적용	토지이용구상(안) 비교
시기·순서	• 개발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2023.04.13.) [별표4]

<표 2-4> 대안의 종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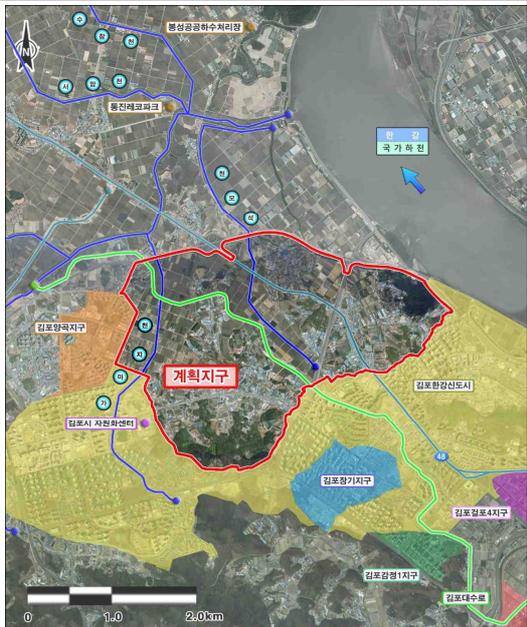
대안종류	설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대안 1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대안 2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수요·공급	토지이용 구상안 비교	대안 1안	토지이용 구상안에 따른 비교·검토
		대안 2안	

나. 대안의 비교·분석

1)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

-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상황(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5> 계획 비교 (Action, No Action)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5대 전략인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등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체계적인 관리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지정 • 합리적 접근체계와 순환동선체계 구축, 기 개발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시가지와 인접함에 따라 주변 현황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계획지구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과 및 자족도시 기능이 강화된 공공주택지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으로 기 개발된 다수의 공공주택지구 및 시가지 등이 위치하고 김포골드선 등 기 형성된 대중교통 체계 및 동부간선도로 등의 교통 및 인접 생활 중심지와 연계된 주변 개발압력이 높아 장·단 기적으로 개별적인 개발 증가 •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각종 보호지역 영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 없으며,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특별관리해역은 계획지구로부터 0.7km 이상 이격되어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 • 단,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한 한강이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단,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한 한강이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에 해당함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생태계 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는 1등급이 위치하지 않으며, 3등급 지역이 전체면적의 90.9%로 대부분을 차지함. 계획지구 북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한 국가하천(한강), 지구 내 지방하천(가마지천, 석모천)등 주변 자연환경 및 생태축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공원·녹지로 조성을 검토·계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이용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적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표고는 40m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사도는 10°미만 지역의 지역이 대부분으로 평탄지와 구릉성 산지부가 혼재하여 위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는 평탄지와 일부 구릉성 산지부가 혼재하여 위치하며 현재 대부분 농경지(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지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과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 등에 일부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정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 변화가 예상되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이용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자연경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 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주변으로 김포골드라인 및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국지도, 지방도 등의 동서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각 생활권을 연결하는 합리적 접근체계와 순환동선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계획지구 주변으로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 양곡지구가 개발되어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이 기구축되어 있어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핵심지를 형성할 수 있음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도권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부응하며,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가능 	

다.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해당 계획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한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하여 2개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2-6> 수요·공급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토지이용구상 (안)						
특징	구분	면적(m ²)	비율(%)	구분	면적(m ²)	비율(%)
	총 계	7,310,502	100.0	총 계	7,310,502	100.0
	주택건설용지	2,683,000	36.7	주택건설용지	2,668,000	36.5
	상업시설용지	103,000	1.4	상업시설용지	168,000	2.3
	도시지원시설용지 (자족, 복합)	929,000	12.7	도시지원시설용지 (자족, 복합)	1,092,000	14.9
	공공시설용지	3,595,502	49.2	공공시설용지	3,382,502	46.3
	공원녹지	2,083,000	28.5	공원녹지	1,945,000	26.6

<표, 계속> 수요·공급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아령구조를 보완하고 김포양곡지구를 포함하는 연담적 구조 및 동서간선도로체계와 철도연장계획을 포함하여 전지역을 포괄하는 핵심지를 형성하여 도심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에 따라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택시장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가마지천 등 지구 내 수계를 적극 보전하고 김포대수로를 도심 수공간으로 반영하여 수변공원 등 배치에 따른 친수공간 및 수변축 기능 강화 계획지구 내 식생이 우수한 지역은 최대한 공원·녹지로 조성을 계획하여 주변 주거지역과 커뮤니티 공간 형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외부(한강, 가마지천, 운유산 등) 자연자원 등을 고려한 공원·녹지계획 수립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자족, 복합)을 집적 배치하고 광역교통노선 연계로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와의 기능 연계를 고려한 자족기능 및 상업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배후 주거지 조성 다핵구조의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통한 중심성 배분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 총 4.6만호 공급 주변 토지이용현황(김포한강신도시, 김포양곡지구 등)과 연계한 주거지역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지구 내 하천과 김포대수로를 활용한 수변공원과 교통시설로 인한 공간단절 방지를 고려한 동서축 녹지축 배치 주거단지 주변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정온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동측 및 남측의 식생이 우수한 지역을 공원·녹지로 계획하여 녹지네트워크 구축 자족기능의 집중배치로 중심성 및 상징성 강화 신규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의 결절지역에 핵심 도시기능의 집중을 통한 중심지 형성 및 교통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 총 4.6만호 공급 주변 토지이용현황(김포한강신도시, 김포양곡지구 등)과 연계한 주거지역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지구 내 하천과 김포대수로를 활용한 수변공원과 교통시설로 인한 공간단절 방지를 고려한 동서축 녹지축 배치 도시지원기능 강화로 1안 대비 낮은 공원녹지율 및 동측지역에 대한 녹지네트워크 연결이 미약 자족기능의 분산배치로 중심성 및 상징성 약화 동측의 자족시설의 광역교통 접근성 비고려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자연자원(한강, 가마지천, 운유산 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도 48호선 등의 도로에 의한 소음·진동, 대기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기개발지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충이 가능한 규모로 중심지를 형성 광역교통시설과의 인접 배치로 인한 접근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족기능과 주거기능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수변·녹지축을 적절히 배치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 선정은 금회 계획의 목적 및 특성, 환경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2-7>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선정	비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공공주택지구 지정, 도시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수요·공급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영향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악		
		• 계획지구의 지형변화 및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생태축 변화 등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상 등	-	
		• 계획지구 주변수계 현황 파악	-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수질오염총량 검토		
입지의 타당성	기 상	•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주변 AWS 자료 활용)	-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현황 파악	-	
		•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의한 에너지사용,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대기질 영향 등 검토		
	약 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약취발생원(김포시자원화센터 등) 현황 조사 및 입지에 따른 계획 지구 내 주거시설 등의 약취 영향 예상	-	
		토 양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소음·진동 현황 파악	
소음·진동	• 공사시 지장물 철거·해체, 건설기계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검토	-		
	• 운영시 계획지구 내부 및 주변도로 이용차량 등에 의한 교통 소음 및 인근 김포국제공항에 의한 항공소음 영향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 운영시 계획지구 내 예정인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 영향 검토	-	

평가항목			선정		비고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전파장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전파장해 유발시설(송전탑 등) 입지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검토	-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에 따른 일조 장해 영향 검토	-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발생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가능여부 검토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등 검토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발생 검토	-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상		-	
		인구·주거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	
		산업	• 계획수립에 따른 산업 변화 영향 검토		-	

2) 환경영향평가

<표 2-8>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제외)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제외)
		중점	현황	제외	
		16	2	2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및 동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자연환경자산	○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 파악을 위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 사업지구 내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이 포함됨
대기 환경	기 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운영시 연료사용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약 취	○	-	-	• 운영시 사업지구 인근 약취발생원(김포시자원화센터 등) 으로 인한 약취 발생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을 강구함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제외)
		중점	현황	제외	
		16	2	2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	-	-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해양환경	-	-	○	•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제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지형·지질	○	-	-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사면발생,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및 항공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위 락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외
	경 관	○	-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일조장해	○	-	-	•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용지 등의 고층건물 입지에 따른 일조장해를 예측하기 위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위 생 공중보건	○	-	-	• 운영시 사업지구 인근 김포시자원화센터 등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전파장해	○	-	-	• 사업시행시 지구 내 송전탑, 송전선로에 의한 영향의 검토 및 적정 저감방안 수립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상주 및 상근인구, 주거 현황 변화 발생으로 인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
	산 업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산업현황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

3) 기후변화영향평가

<표 2-9>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제외)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선정	제외	선정(제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	-	•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표 2-10>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제외) -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선정	제외	선정(제외)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	-	•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	-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	-	•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	•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	-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 분석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	-	•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전략 및 방안 수립

나. 평가범위 및 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의 비교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분류군별 2회 조사 (조류에 한해 계절별 2회) •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습지보호 지역내 법정보호종 등 영향 여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지역 훼손 여부 파악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생태계 영향을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등의 지정 현황 및 영향여부 검토 • 토지이용구상(안) 및 입지현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내용을 토대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계획시행시 경관변화를 가시권 검토 등을 통해 평가·예측 후 적정 저감방안 수립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지표수질 7지점×2회 - 지하수질 3지점×2회 • 시설계획에 따른 토사유출량 및 발생오수에 대한 영향예측 • 시설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산정, 평가 • 수질오염총량 협의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의 검토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참조(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
추동물), 본 사업 조류 조사는 계획지구 인근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습지보호지역에 대
하여 확대 조사
 - 광역조사 범위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주변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7지점×2회(3일)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발생 및 영향을 예측하여 대기 환경기준과 비교 평가
		약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 3지점×2회 약취 현황조사를 통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영향예측 주변 환경기초시설(김포시자원화센터 등) 에 대한 약취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평가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도 현황 4지점×2회 계획시행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소 음 진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5지점×2회 - 항공기소음 2지점×1회(7일)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소음·진동, 운영시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환경기준 등과 비교 평가 및 적정 저감방안 검토·수립 계획지구 남동측으로 약 13km 이격되어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입지로 인한 영향 검토
		전 파 장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장해 2지점×2회 계획지구 내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존치 또는 지중화, 위치 변경 등 계획 파악 및 영향 예측
		일 조 장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영향 정성적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환경기초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연계 처리 등의 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폐기물 처리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과 에너지 순환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계획시행 시 연료사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변화 예측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주변 현황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검토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택공급량 및 분양률 등을 고려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산업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표 2-12>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 ※ 분류군별 조사 범위는“주”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등(법정 보호종, 겨울철새 포함) - 분류군별 2회 조사(조류에 한해 계절별 2회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과 사업시행으로 생태계 변화, 각 분류군별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후 적정 환경보전방안 수립·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자연환경 자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대기 환경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인근 기상관측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주변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 대기질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대 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7지점 x 2회(3일) 공사시 토사이동 및 공사차량에 의한 대기영향 예측(모델링 활용) 및 저감대책 수립(누적평가 고려) 운영시 지구 내 연료사용, 도로 차량 운행 등에 따른 대기영향을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누적평가 고려) - 면·점오염원은 AERMOD등의 적정 확산모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참조 (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본 사업 조류 조사는 계획지구 인근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확대 조사
 - 광역조사 범위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대기 환경	약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 3지점 × 2회 사업지구 주변 약취발생원(김포시자원화센터 등)의 약취유발시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시 정성적 영향 예측,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시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난방 등) 사용,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현황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수 환경	수질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수질 : 7지점 × 2회 - 지하수질 : 3지점 × 2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수질오염총량 협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 예측 공사 시 토사유출 및 운영 시 재해(홍수량, 홍수위 등) 영향 검토(재해영향평가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토공계획 검토,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5지점 × 2회 - 항공기 소음 2지점 × 1회(7일)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운영시 주변 소음원(도로, 항공기) 및 사업지구 내·외부 도로 교통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영향 검토(3D 소음 모델링 검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운영 시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생활 환경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 중경, 원경) 후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 경관변화 최소화 대책 수립	• 운영 시
	위생·공중 보건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건강영향평가항목 2지점 × 2회 •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김포시 자원화센터 등) 입지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한 영향 검토	• 운영 시
	전파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운영시 사업지구 내 송전탑, 송전선로에 의한 영향 관련 문헌조사, 현황조사, 정성적 검토	• 운영 시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 주거시설, 학교 등 일조권 확보 검토	• 운영 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인구 유입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 운영 시
	산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산업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 운영 시

3) 기후변화영향평가

<표 2-13>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역 및 방법		비 고
		평가범위	평가방법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지구	• (간략평가)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 본 계획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로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간략평가로 진행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계획지구	• (간략평가)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지구	• (간략평가)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계획지구	• (간략평가) 대상 계획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표 2-14>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감축”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지역 및 방법			비 고
		구분	지역 (범위)	방법	
온실 가스 감축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	현황 조사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계수, 배출량, 저장·흡수량 현황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영향 예측 평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성하여 산정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축산업, 폐기물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온실가스 배출계수, 사업대상지 면적, 예상인구·세대수 등 활용 	공사 시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영향 예측 평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감축 전략·방안 수립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적극 반영 에너지 자립률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건축물 적용, 녹색교통 활성화, 폐기물 발생량 감축, 탄소 흡수원 조성·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적용, 토지이용계획 등 분야별 예측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수립·제시 사업시행에 따른 분야별 감축 및 탄소 흡수원 확대방안 강구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	국가전역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경기도, 김포시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을 우선하여 평가 계획지구 내 기존 온실가스 저장·흡수원, 기존 배출원의 현황 파악 및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표 2-15> 환경영향평가시 “기후위기 적응”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지역 및 방법			비 고
		구분	지역 (범위)	방법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시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 등 - 극한기후지수 :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 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대상, 피해규모 등 최근 30년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영향 예측 평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인 :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 기후인자별로 취약성을 신뢰도가 검증된 모델·모형으로 분석. 위험성은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산정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파급효과·규모 등을 고려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목록 활용(국가 기후변화, 지자체 기후변화, 사업별 예비 기후변화 등) - 설문조사 활용, 신뢰도가 검증된 예측모델 활용 	-
	기후변화 영향 평가	영향 예측 평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되는 기후영향에 대하여 계획단계에 서부터 적응 방안 마련 - 현재 활용 가능 지표를 고려하여 수립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을 예상 결과에 대해 제시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	국가 전역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경기도, 김포시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을 우선하여 평가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2.2.4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

○ 환경질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등 현황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16> 환경질 조사항목(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비 고
			전략	환평	
대기질	• PM-10, 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 (8개 항목)	7지점 (3일)	2회	2회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 스티렌, HCL, NH ₃ , 황화수소, HCN, Hg, 포름알데히드, Ni, Cr ⁶⁺ , 염화비닐, Cd, As, 아세트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젠(15개 항목)	2지점	-	2회	
약취	• 복합약취	3지점	2회	2회	약취 공정시험기준
지표수질	• pH, BOD, COD, SS, DO, TOC, T-P, 총대장균군수, Cd, As, CN, Hg, 유기인, Pb, Cr ⁶⁺ , PCB, ABS(17개 항목)	7지점	2회	2회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Pb, Hg, As, Cr, NO ₃ -N, NH ₃ -N, Cd, Al, 페놀, KMnO ₄ , 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Cl ⁻ ,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25개 항목)	3지점	2회	2회	먹는물 수질 공정시험기준
토양	•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류, BTEX, TPH, TCE, PCE, 벤조(a)피엔, 1,2-디클로로에탄(22개 항목)	4지점	2회	2회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	• 소음·진동도	5지점	2회	2회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항공기소음	• 항공기소음	2지점 (7일)	1회	1회	
전파장해	• 전계, 자계	2지점	2회	2회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주)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환경질 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단계 시 실시

<표 2-17> 환경질 현황 조사지점(계획)

구 분	조사지점	비 고	
대기질	A-1	김포시 운양동 1249-1	한강한라비발디
	A-2	김포시 장기동 1339	현대아파트 상가
	A-3	김포시 장기동 145-1	운곡새마을회관
	A-4	김포시 장기동 1885-10	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A-5	김포시 구래동 6877-2	호반베르디움 더레이크 5차
	A-6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51	신양중학교
	A-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24-8	누산교회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환경영향평가시)	H-1	김포시 운양동 1139-4	운양5리마을회관
	H-2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1038-39	한강리버힐
약취	O-1	김포시 운양동 1249-1	한강한라비발디
	O-2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1038-39	한강리버힐
	O-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24-8	누산교회
지표수질	W-1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667-2	가마지천
	W-2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360-6	봉성포천
	W-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2	봉성포천
	W-4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190-4	김포대수로
	W-5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41-2	김포대수로
	W-6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09	석모천
	W-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00-10	봉성포천으로 유하하는 수로
지하수질	GW-1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680-2	생활용
	GW-2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169	생활용
	GW-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3-1	생활용
토양	S-1	김포시 운양동 1129-4	주유소
	S-2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898	정비소
	S-3	김포시 양곡리 654-1	고물상
	S-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478-1	정비소
소음·진동	NV-1	김포시 운양동 1249-1	한강한라비발디아파트
	NV-2	김포시 운양동 1139-4	운양5리마을회관
	NV-3	김포시 장기동 145-1	운곡새마을회관
	NV-4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1049	상업시설
	NV-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24-8	누산교회
항공기소음	AN-1	김포시 장기동 1868-5	휠밀리플라자
	AN-2	김포시 양곡리 77-5	주영교회
전파장해	E-1	김포시 운양동 853-1	비닐하우스
	E-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358-1	하이데코

주) 조사지점 세부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3>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도(대기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항공기소음, 전파장해, 건강영향평가)



<그림 2-4>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도(지표수질, 지하수질)

2.2.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표 2-18>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실시근거

관련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민의견 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표 2-19>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근거

관련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가) 공고공람

(1) 신문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2) 공고.공람 사실의 게시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국토교통부)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일~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주관시장.군수.구청장(김포시)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 주민의견 제출서 등

나)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와 협의·결정하고, 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설명회 개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개최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계획의 개요 및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포함해서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에는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는 생략할 예정임

<표 2-20>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생략

관련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으로 본다.

2) 주민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표 2-2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근거

관련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가) 공고공람

(1) 신문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2) 공고·공람 사실의 게시

-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정보통신망(김포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일~6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주관시장·군수·구청장(김포시)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자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 주민의견 제출서 등

나)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와 협의·결정하고,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설명회 개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개최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사업의 개요 및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